국무총리훈령 제 583 호

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과 한국센터 소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, 외교통상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공무원과 한국센터 소장-------.